의안번호	2213833
의 뢰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5.12.29.
추계번호	25D57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3억 7,000만원, 2030년 202억 9,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16억 7,700만원(연평균 143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 (안 제22조제4항)	13,370	12,429	12,667	12,912	20,299	71,677	14,335

주: 1.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안 제22조제4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보전액, 기탁금 국고귀속률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제4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23조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2조제4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O	-
2	안 제23조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동법 [별표 3]에 따라 2,978명이고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총 정수는 동일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93명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도의회의 지역구 의원정수는 동법 [별표 2]에 따라 729명으로 정해져 있고 현행법에 따라 비례대표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로 하되 단수를 1로 보아 93명을 선출

○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를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20%로 하는 경우, 현행보다 2배 늘어나므로 본 추계에서는 93명의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현행법	개정안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는 매년 지출되는 시·도의원 의정활동[1]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을 포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이 있어 재정소요의 변화 발생

- (지출) 의정활동 관련 비용, 정책지원관 인건비,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
- (수입)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시·도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본 추계에서는 47명의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6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시·도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2]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부문은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이고, 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은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 및 수입항목별 인원, 1인당 지급액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의 변화를 산출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9)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0%	1.9%	2.0%	2.0%	2.0%

❑ (의정활동) 개정안에 따라 93명의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원)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은 93명

○ (1인당 지급액) 시·도의원 1인당 지급액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 2.3%에 따라 증가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32.7%[3]을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4]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3] 1인당 지급액 추정(각 항목별 연간지급액):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	2,400	2,400	2,400	2,400	2,400
월정수당	4,405	4,506	4,610	4,716	4,824
기관부담금	600	630	662	696	732
기본경비	2,225	2,258	2,292	2,327	2,362
소계	9,630	9,795	9,964	10,139	10,318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관) 시·도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47명의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시·도의원이 93명이므로 정책지원관은 47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

3)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4)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29%, 2028년 9.444%, 2029년 0.785%, 2030년 10.129%

○ 1인당 지급액은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말함

- 보수는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의 2025년 기준 하한액(55,756천원)에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3~2025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2.4%에 따라 상승
- 기관부담금 요율은 공무원 기준으로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이고, 기본경비 비율은 5.7%(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기준)적용

[표 4] 정책지원관 1인당 지급액(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5,710	5,847	5,987	6,131	6,278
기관부담금(=a×기관부담금요율)	746	768	790	815	840
기본경비(=a×기본경비 비율)	441	449	457	465	474
소계	6,897	7,063	7,234	7,411	7,592
자산취득비	432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후보자 수는 228명으로 가정하고, 기탁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비례대표 후보자 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시·도의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은 1인당 300만원이고, 국고 귀속률은 38.6% 적용[5)]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은 2,722만원[6)]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따라 상승

5)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기탁금 반환율은 61.4%이고 이를 역으로 계산한 국고 귀속률은 38.6%

6)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62억 659만원이고 후보자 수는 228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722만원으로 추정

[표 5]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2,999	–	–	–	3,245
1인당 기탁금 수입(=300만원×38.6%)	116	–	–	–	1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3억 7,000만원, 2030년 202억 9,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16억 7,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 활동	인원(a, 명)	93	93	93	93	93	–
	1인당 지급액(b, 만원)	4,815	9,795	9,964	10,139	10,318	–
	연간 지급액(c=a×b, 백만원)	4,478	9,109	9,267	9,429	9,596	–
	자산취득비(d=a명×498만원, 백만원)	463	–	–	–	–	–
	소계(e=c+d, 백만원)	**4,941**	**9,109**	**9,267**	**9,429**	**9,596**	**42,342**
정책 지원관	인원(f, 명)	47	47	47	47	47	–
	1인당 지급액(g, 만원)	3,448	7,063	7,234	7,411	7,592	–
	연간 지급액(h=f×g, 백만원)	1,621	3,320	3,400	3,483	3,568	–
	자산취득비(i=f×432만원, 백만원)	234	–	–	–	–	–
	소계(j=h+i, 백만원)	**1,855**	**3,320**	**3,400**	**3,483**	**3,568**	**15,626**
선거	후보자 수(k, 명)	228	–	–	–	228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l, 만원)	2,999	–	–	–	3,245	–
	보전액(m=k×l 백만원)	**6,838**	**–**	**–**	**–**	**7,399**	**14,237**
	1인당 기탁금(n, 만원)	116	–	–	–	116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264**	**–**	**–**	**–**	**264**	**528**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13,370**	**12,429**	**12,667**	**12,912**	**20,299**	**71,677**

주: 2026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함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